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989

발의연월일: 2024. 9. 12.

발 의 자:김상훈·김선교·엄태영

권성동 • 윤한홍 • 박수영

김석기 • 김소희 • 이인선

이달희·조 국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악취방지법」은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임의적 규정이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. 영세한 기업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의부담으로 인해 악취저감시설 확충이 더디며,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가여전히 심각한 상황임.

이에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악취 배출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독려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8 신설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8(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장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1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)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설치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지 출한 비용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.
-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설치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 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 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5조의8(악취저감시설 설치비
	용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악
	취방지법」 제2조제3호의 악취
	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
	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악취
	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
	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이
	해당 사업장 안에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악취저감시설을 설
	<u> 치하기 위하여 2029년 12월 31</u>
	일까지 설치비용을 지출하는
	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
	의 1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
	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,
	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
	10)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
	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
	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	<u>한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설치가 2개
	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
	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설치가
	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

<u>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</u> <u>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</u> <u>다.</u>

-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야 한다.
-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설치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